

안양대학교 대학원 학칙

제 12 장 학위수여

제46조(학위수여) ①수업연한을 만료하고 소요학점을 취득한 자로서,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학위청구논문이 심사를 통과한 자에게는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위를 총장이 수여한다.

②학위수여는 「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」과 「특수대학원 학위수여규정」에 의한다.

제47조(명예박사학위수여)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 박사학위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.

제48조(학위수여 취소) 학위를 받은 자가 그 학위과정 이수중에 학생신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었음이 1년 이내에 밝혀졌을 경우, 또는 학위를 받은 후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.